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신용회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대상에 한국장학재단, 전기판매사업자, 이동통신사업자(알뜰폰 사업자 포함),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(안 제75조 등).

II. 검토의견 : 「단말기유통법」 폐지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필요 등

- 개정안은 제75조제2항에 제3의4를 신설하여 “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단말기유통법”) 제2조제2호1)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”²⁾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단말기유통법」은 2025. 1. 21. 폐지되어 2025. 7. 22.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있음.³⁾

1)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이동통신사업자”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.

2) 개정안에 따르면 “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”도 포함됨. 이는 이른바 “알뜰폰사업자”를 의미

3) 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675호, 2025. 1. 21., 폐지]

- 개정안은 빨라야 2025년 8월 중 시행예정이므로,⁴⁾ 개정법률안의 시행시점에는 안 제75조제2항제3의4가 인용하고 있는 「단말기유통법」 제2조제2호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「단말기유통법」의 폐지로 주요 정의규정이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이관된 점⁵⁾을 감안하여, 개정안이 인용한 「단말기유통법」상 정의규정을 「전기통신사업법」상 정의규정을 인용하도록 수정한 법안조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(안 제75조제2항제3의4).

<수 정 의 견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75조(신용회복지원협약) ① (생략)	제75조(신용회복지원협약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· 3의3. (생략)	3의2. · 3의3. (개정안과 같음)
3의4. 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(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	3의4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(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----- -----

4) 개정안은 2025. 2. 24. 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되었는바, 개정안 부칙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최대한 빠른 시행시기는 2025년 8월 중이 될 것임.

5) 「전기통신사업법」(법률 제20677호, 2025. 1. 21., 일부개정)의 개정이유 중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)	----- -----
3의5. (생 략)	3의5. (개정안과 같음)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○ 다만,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부처 의견이 있음.

-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고,⁶⁾ 채무조정에 따른 미회수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적 어려움 및 다른 국민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다수는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, 신용회복지원협약과 무관한 알뜰폰사업자 및 통신과금사업자에게까지 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○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)

6) 2024년 기준 390만호, 6,815억원 지원